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특례 규정 신설〉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6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최형두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5. 1. 10.
3. 회 부 일: 2025. 1. 13.

II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공무원에 대한 송달을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임(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0조의2(고위공직자에 관한 송달)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및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에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개정안 검토

가. 형사소송법의 송달

송달은 법원 또는 법관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인, 검사,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¹⁾

현행 형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²⁾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교부송달이 원칙³⁾이고 기타 조우송달⁴⁾, 보충 및 유치송달, 우편송달, 송달함 송달 등이 가능함.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규칙에서 전화·팩스·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⁵⁾함으로써, 소송실무상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1) 노태악,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97면.

2)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3) 「민사소송법」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 ② (생략)

③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5) 「민사소송규칙」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시밀리·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 송달은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이 원칙적인 방법이 되었음.

한편,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⁶⁾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명령으로 하여야 함.⁷⁾

나. 형사소송에서 우편발송에 따른 송달효과 인정 여부

형사소송법은 제60조⁸⁾제1항에서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제61조⁹⁾제1항에서 ‘주거,

6)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7) 「형사소송법」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8) 「형사소송법」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형사소송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조제2항에서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문부재 또는 고의 회피 등 서류가 피고인 등에게 실제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됨.

형사소송법 제60조가 피고인 등에게 송달영수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가 피고인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형사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송달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같은 중대한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송달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실질적인 보장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송달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이에 관한 판례는 “소송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송달 받을 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 없이 등기우편으로 인한 송달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상소 기간 도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¹⁰⁾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입게 될 현실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우편송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약식명령을 제외¹¹⁾하고는 우편 송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¹²⁾

10) 대법원 1998. 7. 13. 자 98모53 결정

11) 대법원 2002. 9. 27. 자 2002모184 결정

다. 송달의 효과

송달의 효과는 법원 또는 법관이 의도한 효과의사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송달에 관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함. 그 법적 효과를 보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부분의 송달은 공판심리개시의 조건이며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의무가 발생하고, 결정서등본의 송달로 결정의 송달대상자에 대한 효력이 성립하며, 약식명령서 등본의 송달로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진행하고, 항소기록과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로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됨.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송달이 행하여진 때인데, 피고인의 송달영수인에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¹³⁾하고,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일로 부터 2주일 또는 5일이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¹⁴⁾함.

12) 법원실무제요, 형사[I], 법원행정처(2014), 472; 이주원,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2021), 68.

13) 「형사소송법」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14) 「형사소송법」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라.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송달을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고위공직자에 대한 송달방법을 다양화하고 도달 간주 규정을 두어 송달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송달 회피를 방지하며, 형사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권,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우선,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전달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실제로 송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자우편의 경우 스팸메일로 분류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우편 등으로 잘못 송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¹⁵⁾한 바 있으나, 이는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송달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송달에 관한 것임. 따라서, 신청 없이도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달 시 도달로 간주하는 개정안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형사재판의 송달로 재판이 시작되어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까지 나아가는 것이므로,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대한 제한뿐만 아닌 개인으로서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송달을 간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3

15)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가19 결정